

대구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33244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332441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11. 15 선고 2022가단52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김소연, 안상배, 임승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대규

변론 종결 2023. 6. 14.

판결 선고 2023. 8. 1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11. 15. 선고 2022가단5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경북 영덕군 E 전 641m²에 관하여 2019. 4.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 4. 12. 접수 제3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3.부터 2019. 7.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C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고 일부를 변제를 받았다.

[표]

2018. 12. 13.	13,000,000원		1,200,000원
2018. 12. 14.	50,000,000원	2018. 12. 14.	5,000,000원
2018. 12. 15.	3,600,000원	2018. 12. 15.	6,900,000원
2018. 12. 17.	20,000,000원	2018. 12. 19.	4,400,000원
2018. 12. 19.	9,000,000원	2018. 12. 24.	5,000,000원
2018. 12. 31.	6,000,000원		

2018. 12. 13.	13,000,000원		1,200,000원
2019. 1. 3.	20,000,000원	2019. 1. 4.	
2019. 1. 11.	10,000,000원	2019. 1. 10.	10,000,000원
2019. 1. 12.	10,000,000원	2019. 1. 14.	7,600,000원
2019. 2. 1.	22,000,000원	2019. 2. 9.	2,000,000원
2019. 2. 18.	20,000,000원	2019. 2. 19.	1,500,000원
2019. 2. 19.	20,000,000원	2019. 2. 20.	24,600,000원
2019. 2. 20.	80,000,000원	2019. 2. 21.	4,500,000원
2019. 3. 27.	4,900,000원	2019. 7. 10.	200,000원
2019. 3. 29.	3,000,000원		
2019. 5. 14.	200,000원		
2019. 5. 20.	8,000,000원		
합계	299,700,000원	합계	72,900,000원

나. 원고는 2021. 3.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차전306호로 대여금 21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11. "C은 원고에게 21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1. 4.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19. 4. 11.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 4. 12. 접수 제3863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등기상 거래가액 30,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218,800,000원(= 원고가 2019. 4. 11.까지 C에게 입금한 291,500,000원 - C이 2019. 4. 11.까지 원고에게 입금한

72,700,000원), D저축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 4,500,000원 등 합계 223,3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21.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열람하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3,000만 원임에도 피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4,500만 원인 것 알 수 있었으며, 원고는 C으로부터 은행의 후순위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2021. 5. 12. 무렵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22. 5. 2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이켜보면,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21. 5. 12. 무렵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까지 C에 대하여 218,8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C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 피고에게 당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19. 4. 1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전에 발생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었다거나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써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함을 요건으로 할 뿐 그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 책임재산이 피보전채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존재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근저당권 설정해주면서 금원 차용을 요청하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9. 6. 17.부터 2019. 7. 23.까지 61,601,000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제3채권자의 존재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설령 피고가 C에게 향후 대여할 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원물반환)

사해행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태천

판사김정섭

판사박소민